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토론회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긴급 토론회**

일시 | 2026년 2월 5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이학영·서영교·백혜련·박주민·오기형·김남근·차규근·한창민

국회의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실련,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목차

인사말	문미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공동대표	6
	윤복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공동대표	7
	이의영 / 경실련 공동대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공동대표	9
	이학영 /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4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
	차규근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8
	한창민 /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19
발제	한경수 /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20
	이은우 /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자문위원	26
토론	이정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36
	심제원 / 법무법인 여기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38
	박정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40
	박광호 /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42
	박종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과장	43
	장수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사무관	44

프로그램

10:00 사회	문미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공동대표
10:00 인사말	이의영 / 경실련 공동대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공동대표 이학영 /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차규근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한창민 /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10:13 기념사진 촬영	
10:15 발제1	한경수 /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10:30 발제2	이은우 /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자문위원
10:45 토론	이정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심제원 / 법무법인 여기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박정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박광호 /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박종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과장 장수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사무관
11:25 종합토론	
11:45 폐회	

안녕하십니까.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공동대표이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문미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안을 발의해주시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서영교, 백혜련, 박주민, 오기형, 김남근 국회의원님, 그리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님,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의미 있는 발제와 토론으로 자리를 빛내주실 발제자·토론자 여러분, 집단소송법 제정에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 등 소비자 3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광범위하고 반복적인 소비자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와 시장질서 준수로 소비자 피해예방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 해 주셨지만, 매년 시기상조론, 국민경제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번번히 무산되었습니다. 이제는 시기적으로나 명분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은 티메프 사태의 후폭풍과 광범위한 소비자피해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겨진 채로 초대형 개인정보유출과 디지털 위험이 국민들의 일상을 뒤흔든 한해였습니다.

SKT를 시작으로 연말 쿠팡의 사상초유의 3,370만명 개인정보유출 참사까지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이를 축소, 은폐하려 하였고, 개인정보유출 피해소비자 뿐 아니라 정부, 국회에 대해서도 무책임과 무성의로 일관하여 국민적 분노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2의 쿠팡사태를 방지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해서는 더 이상 집단소송법 제정을 미룰 수 없습니다. 12개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에서 글로벌 시장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턱없이 부족한 법제 미비로 차별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주도하는 디지털 강국, AI강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집단소송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반드시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규모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을 제정하기 위해 긴급토론회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를 대표하여 감사 인사 드립니다.

쿠팡의 3,370만명 개인정보유출로부터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집단소송법 제정 필요성은 기실 소비자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근래에만 해도 가습기살균제참사, BMW화재, 통신사,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번 해당 기업은 적극적으로 책임 지기보다 위기 모면용 소극적 대처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개인정보유출로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에게 5천원짜리 쿠폰 보상안을 지급하고 미국 정계를 동원하여 적법한 진상 규명 과정에 '마녀사냥'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쿠팡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구제나 재발 방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집단소송법이 존재했다면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둔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반복되는 소비자 집단피해와 이를 나 몰라라 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의 답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일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집단소송법이나 단체소송법과 같은 제도를 두어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 집단피해의 반복 발생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기업보호를 이유로 매번 입법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증권 분야에 한정해 도입된 집단소송 도입 분야를 넓혀 포괄적 분야로 확대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고, 22대 국회에서 8개의 집단소송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대규모 피해가 연속되고 있는 만큼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토론회가 신속한 입법을 위한 의미 있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의원님들과 전문가, 관계자분들께서 집단소송법 제정으로 제2의 쿠팡사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아내는 데 앞장 서주시리라 믿기에 든든합니다.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역시 한국 사회의 시민으로서 소비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 공동대표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집단소송법 제정에 관심을 갖고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 해주신 이학영, 박주민, 백혜련, 오기형, 김남근, 차규근, 한창민 의원님을 비롯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함께 해주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에도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 기업의 지배력이 일상을 압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규모와 양상은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이러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약 3,000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전무하며 기업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 제도에서 개별 소비자가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상당한 배·보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입증 책임의 한계,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 그리고 긴 재판 기간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권리 구제를 포기하게 만드는 높은 장벽입니다. 기업은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조차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보다 사후 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왜곡된 대응방식을 고착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의 공백 속에서 집단소송법 도입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제 집단소송법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개선을 넘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통일된 절차로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사법 자원의 낭비를 막는 길일뿐만 아니라,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법적 강제력을 부과함으로써 대규모 정보유출·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비극을 예방하는 강력한 조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집단소송법, 옵트인 형식 단체소송법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핵심은 거대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응해 소비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피해 구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해외 집단소송법 입법례와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의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에서의 피해 사례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나눈 논의와 대안들이 밑거름이 되어, 대한민국이 강자의 횡포를 방관하지 않고 응당한 책임을 갖게 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임 역시 오늘 도출된 귀중한 제언들을 바탕으로 국회·시민사회와 함께 토론하고 협의하며 집단소송법이 마침내 입법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의영입니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 토론회를 시민사회단체와 집단소송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님과 함께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준비하고 마련해주신 이학영의원님, 박주민의원님, 백혜련의원님, 오기형의원님, 김남근의원님, 차규근의원님, 한창민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합니다.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자동차 화재사고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지만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피해내용, 기업의 책임을 밝혀야하는데, 정보도 충분하지 않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기업을 상대로 개별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효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기업은 책임회피에 급급할 뿐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문제 있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에 소비자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다수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해서는 안됩니다.

그간 시민사회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을 요구해왔습니다. 기존 민사나 행정소송으로는 소액다수의 피해가 특징인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개별피해자가 각각의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아닌 집단적으로 발생한 피해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안이어야 합니다.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가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 손해배상제도 역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나 처벌이 미흡합니다. 고의 중과실에 의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당사자에게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합니다.

끝으로 2018년 문재인정부는 집단소송법제정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입법엔 실패했지만 7년 전 제도가 도입되었다면 여전히 무책임한 기업을 향해 분통만 터뜨리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섰을 것입니다. 22대 국회에 이미 8개의 집단소송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재명대통령도 법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정성호법무부장관도 집단소송법을 '민생·안전 10대 법안'으로 추진계획을 밝혀 국회와 정부 모두 입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국민의 간절한 요구가 입법으로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부의장 이학영입니다.

‘제2의 쿠팡 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논의의 장을 함께 마련해 박주민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오기형 의원님, 김남근 의원님, 차규근 의원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 관계자분과 시민사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영 /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우리 사회는
소비자에게 막대 피해를 남긴 사건들을 반복해서 겪어 왔습니다.

최근 3,370만 명에 달하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서울시 공유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에서 발생
한 약 450만 명 규모의 회원 정보 유출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과 공공 영역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발생 이후의 조치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5개월 지연하고 의도적
으로 피해를 축소 표현하였으며, 보상도 현금 아닌 플랫폼 쿠폰으로 지급해 소비자를 우롱했습니다. SKT 개인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원이 제시한 보상안마저 기업이 수용하지 않은 사례는, 기업의 책임 이행과 피
해 구제가 현행 제도 아래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가 집단적으로 책임을 묻
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집단소송 제도는
특정 분야에 한정해 도입되는 데 그쳤고, 그마저도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입증 책임으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실패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대
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저는 20대 국회부터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고, 관련 법안 발의와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8건의 집단소송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의 논의 흐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
하기 위해 집단소송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 도입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입증 책임 완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는 논의가 반복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와 기업의 책임 강화를 함께 이뤄가는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부의장으로서 소비자가 제대로 보호받고, 기업이 보안 투자와 사전 예방에 책임 있게 나설 수 있는 제도가 22대 국회에서 입법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제2의 쿠팡 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집단소송법제정연대 소속 19개
소비자 시민단체 여러분과, 공동주최로 함께해주신 이학영 부의장님,
박주민·백혜련·오기형·김남근·차규근·한창민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차량 화재, 통신사·카드사·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까지, 대규모 소비자 피해는
반복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최근 약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한 쿠팡 사태 역시 기업의 책임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보상 대신, 5
천 원짜리 쿠폰을 보상안으로 지급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형식적인 대책으로 큰 공분을 샀습니다.

더 이상 소비자들이 고통받도록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집단 피해 앞에서 개별 소비자들이 과도한 입증 부담과 소송 비용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
해 기업의 불법·부당행위는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한 채 반복되어 왔습니다.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에 전면 확대하여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
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반복되는 소비자 집단피해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 행태를 바로잡
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지혜가 모여,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제도적 해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소비자가 홀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회, 기업의 위법 행위에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사회를 만
들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삶과 권리를 지
켜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을 국회의원 백혜련입니다.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 소송법 긴급 토론회>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주최를 함께 해주신 이학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시민단체와 소비자 단체가 함께하는 집단소송법제정연대에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집단소송법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2005년 증권 분야에 한정적으로 도입이 된 탓에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초선부터 집단소송법을 꾸준히 발의해 왔으나, 논의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해 늘 아쉬움이 컸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부터 끊이지 않는 통신·카드사를 비롯한 쿠팡 사태와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기업의 잘못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현행 민사소송 체계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업의 잘못으로 발생한 다수의 피해에 대해 개인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소송 비용 지출, 번거로운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아 결국엔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집단소송법은 소비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피해자를 대표하는 소수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의 효력이 다수의 피해자 전체에게 미치게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집단소송법안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OECD 대부분 국가들은 이미 집단 소송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집단소송법의 필요성에 사회가 공감하고 있고 논의도 오랜 기간 숙성되어왔습니다. 지금이 집단소송법안을 도입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집단소송법안에 대해 토론하고 올바른 입법 방향을 토론하는 이 자리가 매우 뜻 깊습니다. 하루 빨리 집단소송법안이 통과되어 강력한 소비자 보호망이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법을 직접 발의한 의원으로서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을 꼼꼼히 챙기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입니다.

오늘 '대규모 소비자피해 방지와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토론회'를 준비해주신 19개 소비자·시민단체 여러분,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부터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까지, 대규모 사고가 터질 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마주하는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특히 최근 쿠팡 사태에서는 수천만 명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새어 나갔는데도 고작 5,000원짜리 쿠폰 한 장으로 입을 막으려는 기업의 오만함에 국민은 다시 한번 상처 입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안전을 챙기는 비용보다, 사고가 난 뒤 대충 보상하는 척하며 버티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걸어 피해를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이제는 시민이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집단소송제법을 꾸준히 대표발의해왔습니다.

수만, 수백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각자가 소송을 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책임을 제대로 묻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피해가 인정되면 다른 모든 피해자도 함께 구제받는 '집단소송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강력한 행정 제재와 실효성 있는 사법적 구제가 동시에 작동해야 기업이 바뀝니다.

끝까지 시민 곁에서 행동하며,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박주민, 백혜련, 김남근, 차규근 한창민 의원님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와 함께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관계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행 민사소송 제도 하에서는,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그 피해구제를 위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예상되는 배상금보다 소송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구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 중 한 명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피해자집단 전체에 대해 인정
하는 소송절차를 '집단소송'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증권 분야에 한하여 집단소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애플이 아이폰 업데이트를 통해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사건).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
리나라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인터넷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참여를 희망하는가' 조사하니, 희망자가
403,722명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인터넷 상으로 전자계약 절차를 진행하라고 안내하니, 정식으로 소송을 위
임한 사람이 63,767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초기에 비용부담이 없는 상황에서도 참여자 수가 7분의 1로 급감
한 것입니다.

이후 소장을 제출하는 단계에서도, 원고 수가 너무 많아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전자문서가 존재함에도, 이를 출력하여 종이로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다시 스캔하여 전자문서로 등록하는 작업
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또한 전자문서로서 소송위임계약서가 제출되었음에도, 1심 법원은 소 제기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대리권
과 관련하여 소송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제출"이라는 보정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원고들 중 (1)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이 9,183명, (2)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소송위임 의사
를 확인한 사람이 184명, (3) 아예 소를 취하한 사람이 960명이었고, (4)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사람은
53,44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심 판결 결과 전자문서에 따른 위임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어, 소를 취하한
960명만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위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원고 7명의
항소가 인용되어 대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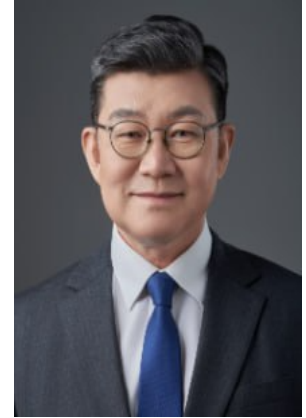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사건의 경우, 미국·칠레 등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된 나라에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된 나라의 소비자들은 구제를 받고, 그렇지 않은 나라의 소비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대형 온라인 플랫폼, 이동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소액·다수의 피해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증권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까지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에 관한 여러 관점과 대안이 폭넓게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국회의원 김남근입니다.

오늘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이학영·서영교·백혜련·
박주민·오기형·차규근·한창민 의원님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근 반복되고 있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는 더 이상 개별 분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보듯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책임져야 할 기업은 회피로 일관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집단적 피해 구제 제도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집단소송제가 증권 분야
에 한정되어 있고, 그마저도 참여 요건과 입증 책임이 과도하게 엄격하다 보니 실제로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입
니다. 그 결과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 역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
하고 입증 책임의 어려움 등 '을'의 위치에 놓여있는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기업의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저는 지난 12월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고, 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집단소송제
의 전면 도입 필요성뿐 아니라, 어떤 제도 설계가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지, 또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완화와 같은 장치들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쟁점들
은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 구제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이 처음부터 책임 있는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
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집단소송법 제정의 핵심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대규모 피해로 고통
받아 온 소비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소비자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호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
랍니다. 저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빠른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오늘 <제2의 쿠팡 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긴급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한경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님,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신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님, 심제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님,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님, 박광호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님, 안우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서기관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여러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차규근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우리는 지금 수익은 한국에서 거두고, 국적은 미국이며, 책임은 없는 기형적인 기업 행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역대 최악의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측은 반
성 없는 태도로 쿠폰 형태의 제한적 보상안을 내놓으며 사태를 무마하려 해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부터 이번 쿠팡 사태까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업이 잘못
을 저질러도 제대로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솜방망이 처벌과 까다로운 소송 절차는 기업들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잘못된 시그널만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계란으로 바위 치듯 개별적으로 소송해야 하는 지금의 비
효율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쿠팡 사태는 필연적으로 재발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년 5월, 이미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피해자 50인 이상이라면 분야의 제한 없이 적용되는 포괄적 집단소송제입니다. 무엇보다 정보의 비대
칭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 제기 전에도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를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책을 담았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반복되는 소비자 집단피해와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집단소송법을 통과시켜 무너진 소비자 주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문제의식과 제안이 입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 관계자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서영교, 백혜련,
박주민, 오기형, 김남근 의원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창민 /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화재, 통신사와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이미 수차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경험해 왔습니다. 피해는 항상 광범위했고,
그 후유증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사과는 형식적이었고, 책임은 축소되었으며,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소비자 개인의 몫으로 떠넘겨졌습니다.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집단소송의 도입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
려 3,37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기업이 내놓은 보상안은 일률적인 5천 원 쿠폰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막대한 로비자금을 동원해 미국 정관계를 움직여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소비자를 우롱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친중·반미정부로 규정하고, 미국기업 쿠팡을 '마녀사냥'중이라고 호도했
습니다. 3,37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은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의 보다 단호한 대
응, 제2의 쿠팡사태를 막기 위한 법과 규제의 강화가 절실한 때입니다.

해외 여러나라에서는 각자의 법체계에 맞춰 이미 집단적 구제 장치를 도입·운영했습니다. 우리도 더는 '논의만'
반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금융·소비자 피해처럼 피해가 광범위하게 번지는 시대에,
개인이 홀로 싸워 이기라고 요구하는 건 사실상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집단소송법은 단순한 소송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에게는
예방의 책임을 분명히 부과하는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국회에는 이미 다양한 집단소송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고 쟁점도 분명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뒤
에도, 국회가 또 검토만 말하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미루는 동안 피해자는 지치고, 가해자는 버팁니다.
오늘 논의된 쟁점을 바탕으로, 더 넓은 피해를 포괄하고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 제도가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제1. 집단소송법의 비교 검토 및 쟁점

한경수 /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1. 현황

현재 집단소송법에 대하여 발의한 입법안은 백혜련 의원안(의안번호 2896), 박주민 의원안(의안번호 6276), 이학영 의원안 (의안번호 13144), 김남근 의원안(의안번호 15824), 오기형 의원안(의안번호 15877), 차규근 의원안(의안번호 10550), 한창민 의원안(의안번호 13199) 등이 있습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집단소송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일부 적용범위를 한정하거나 소송주체를 한정하는 등 다양한 수정 입장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하에서는 발의된 각 법률안 별 차이점과 쟁점에 대해 비교하고,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이름만 기재합니다).

2. 각 법률안 별 차이점

가. 적용 범위

일반적/포괄적 규정	분야별 규정			
	박주민	이학영	김남근	한창민
백혜련/오기형/차규근/시민사회단체안	소비자기본법 제20조 등 8개 법률 + 대통령령	소비자계약 관련	소비자기본법 등 10개 법률 + 대통령령	금융소비자

※ 핵심적인 차이점 :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 환경오염 사건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
법률에서 열거한 분야 VS 요건을 충족한 모든 분야

나. 소송 주체 (원고 적격)

대표당사자	대표당사자 기본 +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단체 등
백혜련/박주민/차규근/한창민	오기형/시민사회단체안	이학영/김남근

※ 오기형 안 : 대표당사자를 기본으로 하되, 소비자단체 등도 책임확인 소송 가능
※ 김남근 안 : 100명 이상의 요청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도 소송 가능

다. 피고 범위 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으로 제한	제한 없음
김남근	백혜련/박주민/이학영/오기형/차규근/한창민/시민사회단체

라. 소송허가 여부

소송허가 신청	중간판결	소송 적격 심사
백혜련/박주민/오기형/차규근	한창민	이학영/김남근/시민사회단체안

마. 인지대

상한액 500만원 규정	산출액의 1/2		소가를 계산할 수 없는 소송으로 간주
	상한 1,000만원	상한 5,000만원	
이학영/김남근	박주민/오기형/시민사회단체안	차규근/한창민	백혜련

바. 소송 단계

1단계 이행소송	1단계 공통의무 확인소송, 2단계 채권확정절차
백혜련/박주민/오기형/차규근/한창민 /시민사회단체안	이학영/김남근 (소송 주체가 소비자단체 등인 경우)

사. 증거조사 관련

구분	백혜련	박주민	이학영	김남근	오기형	차규근	시민사회단체안
핵심제도	허가전 증거개시 구체적 답변의무	직권 증거조사	정보제출명령	한국형 증거개시	광범위한 자료 제출(영업비밀)	소송전 증거조사 증거유지 명령	자료제출명령 (소지,관리,통제)
자료제출 명령 특례	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	필수정보 제출 신청	정보제출명령	자료제출명령 -영업비밀 포함	자료등 제출명령 -영업비밀 포함	자료제출명령 -자료의 제시
조사 방식 및 주체	석명권 강화	당사자 신문	직권조사 및 신문	지정전문가 사실조사	직권조사	당사자 신문	직권조사
불응시 제재	답변 거부 등 사실 인정	일정한 경우 사실 인정	불응시 등 사실 인정	제출거부 등 사실 인정	훼손, 은닉 등 사실 인정	제출명령 위반시 존재 추정	훼손, 은닉 등 사실 인정
기타	주장 답변 특칙 원고·개략적 피고: 구체적	현상보전명령	증거보전	자료보전명령	비밀유지	증거유지명령 -제3자 포함	증거보전 및 개시

- * 한창민 의원안은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내용이므로 생략함
- * 정보 비대칭 해소 : 개괄적 기재로 원고 입증부담 완화 (박주민·오기형·차규근 의원안)
- * 영업비밀과의 충돌 : 소비자의 알 권리와 피해 구제 우선 (오기형, 차규근 의원안)
- * 소송전 증거조사(차규근 의원안), 허가 전 증거개시(백혜련 의원안)
- * 피고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거를 은닉할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

아. 판결의 효력

옵트 아웃 (Opt-out) 방식	옵트 인 (Opt-in) 방식
백혜련/박주민/오기형/차규근/한창민/시민사회단체안	이학영/김남근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같은 분배절차 규정은 옵트 아웃 방식에만 존재함
- * 차규근 안은 국민참여재판 도입

자. 잔여금 처리

국고 귀속	피고 반환
백혜련/오기형 - 소비자기금 등으로 활용하자는 안 (시민사회단체 안)	박주민/차규근/한창민

- * 옵트 인 방식(이학영, 김남근 안)을 취하는 경우 잔여금이 발생하지 않음

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의 관계

폐지	법안에 포함	개정	존치
오기형/차규근/시민사회단체안	김남근/오기형/차규근	한창민	백혜련/이학영/박주민

3. 분야별 도입하는 안에 대한 비교

구분	이학영 안	박주민 안	김남근 안	한창민 안
소송 범위	소비자계약에 따른 - 피해 발생 - 소비자가 채무이행청구 를 받은 경우 - 공통적인 금전채무확인	- 소비자기본법 20조1항등 - 제조물책임법 3조 - 공정거래법 109조 - 개인정보법 39조 - 표시광고법 10조 - 전자상거래법 21조1항 - 할부거래법 34조 - 방문판매법 23조, 제24조 - 대통령령	- 소비자기본법 4조 1항 - 제조물책임법 3조 - 공정거래법 109조 - 개인정보보호법 39조 - 상법 382조의3 - 환경피해구제법 - 하도급법 35조 - 가맹사업법 37조의2 - 대규모유통업법 35조의2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대통령령	- 금융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21조의2 제1항 추가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구권의 성격 등

구분	백해련	박주민	이학영	김남근	오기형	차규근	시민사회단체안
집단소송 정의	피해의 구제를 구하는 소송	손해배상	채무이행 청구 공통적인 금전 채무 확인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법령상 손해책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법령상 손해책임	손해배상청구	피해의 구제 + 법률상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
청구권의 성격	- 손해배상 - 원상회복	- 손해배상	- 계약상 이행 - 계약상 손해 - 금전채무확인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법령상 손해책임	- 원상회복 - 손해전보 - 손해배상 - 책임확인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원상회복 - 침해금지, 예방

※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청약철회권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 청약철회권은 계약의 해제, 해지와는 다른 법률상의 권리로 인정

5. 징벌적 손해배상

구분	백해련	박주민	이학영	김남근	오기형	차규근	시민사회단체안
징벌적 손해배상	없음	없음	고의, 중과실 생명, 신체, 재산 3배까지 채권신고 가능	생명, 신체, 재산 손해 발생시 5배까지 공통책임확인시	없음	없음	없음

※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인 집단소송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체계상 적합한지 여부

※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할 경우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지 여부

※ 개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제1항
- 신용정보보호법 제43조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
- 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 제1항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
-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
- 대리점법 제34조 제2항
-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 환경보건법 제19조의2 제1항
- 공익신고법 제29조의2 제1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 제2항
- 독점규제법 제109조 제2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
- 상표법 제110조 제7항 및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
- 상생협력촉진법 제40조의2 제2항

6. 소송유형별 각 법률안 비교

- 1유형 : 개인정보 유출 사안 (쿠팡 등). 정신적 손해에 따른 피해자 별 같은 손해액이 인정되는 경우
- 2유형 : 계약관계에 따라 피해자별 손해금액이 다른 경우
- 3유형 :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피해자별 손해금액이 다른 경우
- 4유형 : 청약철회권 등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구분		백혜련	박주민	김남근	오기형	이학영	차규근	시민사회단체
소송 가능 여부	1유형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2유형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3유형	가능	가능	가능	가능	△	가능	가능
	4유형	△	불가능	불가능	△	가능	불가능	△
소송 제기		대표당사자 - 50인	대표당사자 - 50인	비영리단체 (100인 이상) 소비자단체 등	대표당사자 또는 비영리 단체 등	소비자단체	대표당사자 - 50인	대표당사자 또는 비영리단 체 등
청구권 성 격	정신적 손해 (개인정보)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손해배상 책임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계약상 이행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행청구 또는 책임확인	1유형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2유형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3유형	가능	가능	가능	가능	△	가능	가능
	4유형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	△	불가능	불가능
손해액 채 권확정 절 차	1유형			가능		불가능		
	2유형			손해액 다툼 심 함		손해액 다툼 심함		
	3유형			손해액 다툼 심 함		△ (안전의무위 반시)		
	4유형			불가능		불가능		

7. 요구 사항

첫째, 전 세계 주요 국가들 모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금지 청구 또는 예방 청구 외에 이행청구를 포함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 운동 시기에 들어가기 전인 2월과 3월 안에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집단소송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대표당사자 형태이든 단체소송 형태이든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 시민사회단체는 대표당사자 형태를 기본으로 하되 단체소송도 가능한 모델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셋째, 시민사회단체는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집단소송제를 지지한다.

넷째, 시민사회단체는 개보법에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정도 수준은 동의할 수 없다. 법사위와 정무위가 관할 다툼을 벌이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정부 여당이 2월 내에 단일안을 논의하여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

다섯째, 여야 합의가 중요한만큼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은우 /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자문위원



세계의 집단 구제제도와 우리에게 주는 함의

글로벌 표준(Global Standard)을 향한 한국의 선택

이은우 변호사 | 법무법인 지향,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자문위원

2026년, 한국 사법 시스템의 과제

요약: 왜 지금 ‘집단소송법’인가?

01

고립된 한국 (Isolation)

OECD 38개국 중 집단 구제 제도가 사실상 부재한 최악의 상황. 디지털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나, 소비자 및 중소기업 보호 인프라는 최하위.

02

글로벌 대세는 ‘옵트아웃’ (Global Trend)

‘합리적 무관심(Rational Apathy)’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는 ‘옵트아웃(Opt-out, 제외신고형)’으로 이동 중. 미국, 캐나다를 넘어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다수 국가가 효율적 구제를 위해 채택.

03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필수 인프라 (Fair Competition)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 불법을 저지른 기업이 이익을 보는 구조를 타파. 소상공인과 준법 기업을 보호하여 ‘기울어진 운동장(Level Playing Field)’을 바로잡는 경제적 도구.

권리가 있는 곳에 구제가 있다 (Ubi jus ibi remedium)

구제 없는 권리는 ‘가짜 권리’다.

권리가 침해되었음에도 비용과 복잡성 때문에 구제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권리가 아님.

Noto Serif KR



현대 민사사법의 근간
(대량 분쟁 해결의 가교)

Noto Serif KR



사법 접근성
(Access to Justice)



행동 교정
(Behaviour Modification)

UNCTAD: ‘실효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집단 구제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OECD 38개국 중 ‘집단구제 사각지대’, 한국

35개국

일반적 집단구제 가능 국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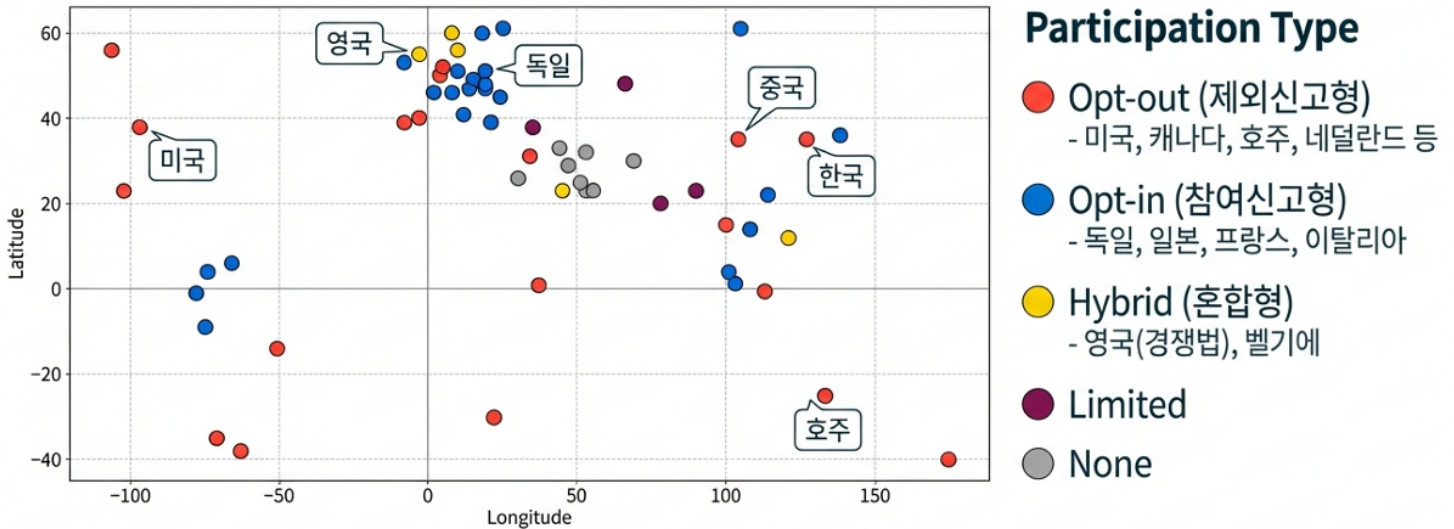
3개국

제한적/부재 국가

- 튀르키예: 위법확인소송 가능
- 스위스: 권리양도 방식 활용
- **한국**: 소비자 분야 집단적 손해배상 및 위법확인소송 모두 불가능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걸맞지 않는 후진적 법적 인프라.

세계의 선택: 집단구제 제도의 글로벌 분포



전 세계 대륙에서 '제외신고형(Opt-out)'이 확산되는 추세.

왜 '옵트아웃(Opt-out)'인가? : 합리적 무관심의 극복

참여신고형 (Opt-in)



저조한 참여율 = 권리구제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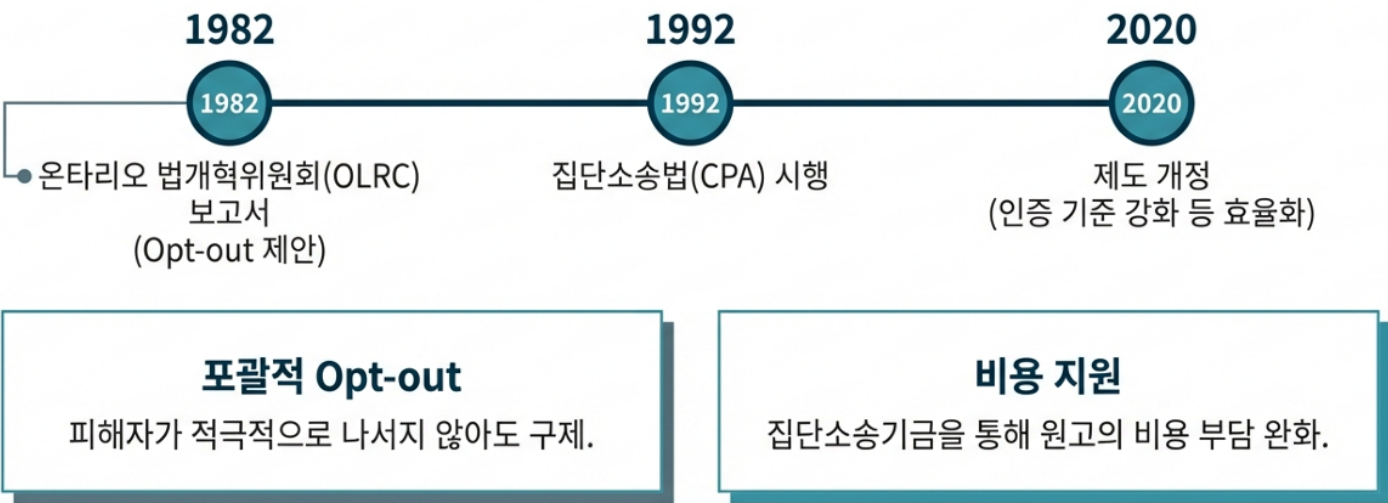
제외신고형 (Opt-out)



합리적 무관심(Rational Apathy) 해결 = **실효적 구제**

절차적 권리 보장은 '통지(Notice)' 제도로 보완 가능하며, 전 세계적으로 실효성을 위해 옵트아웃으로 이동 중.

캐나다: 성공적인 옵트아웃(Opt-out)의 표준



30년 이상의 운용 경험을 통해 ‘실효적 권리 구제는 Opt-out에서 극대화된다’는 것을 입증.

이스라엘: 제도의 진화 (2006년 도입 → 2024년 개선)

제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운용하며 수정해 나가는 것.

2024년 주요 개정 사항 (Key Reforms)



사전 고지

(Preliminary Inquiry)

소송 전 피고에게
시정 기회 부여



연쇄 원고

(Serial Plaintiffs) 제한

동일인
연 5건 초과 금지



조기 기각

(Summary Dismissal)

악의적 소송
초기 종결



영세 사업자 보호

직원 5명 이하/소상공인
대상 소송 금지

30년 이상의 운용 경험을 통해 ‘실효적 권리 구제는 Opt-out에서 극대화된다’는 것을 입증.

미국식 ‘집단소송’이 아닌, EU 고유의 ‘단체소송(Representative Action)’ 도입 배경

28개 회원국의 법적 통합과 기존 인프라 활용을 위한 전략적 선택 (Directive 2020/1828)



Harmonization (제도의 통일성)

배경: EU는 28개 회원국(Member States)의 서로 다른 법률 시스템에 공통 적용 가능한 제도가 필요함.

내용: 강력한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보다는, 회원국 간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만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단체소송’ 모델을 채택.



Infrastructure (기존 인프라 활용)

배경: 1998년부터 존재해 온 ‘적격 단체(Qualified Entities)’ 활용.

내용: 이미 금지청구(Injunctions) 권한을 가진 소비자 단체나 정부 기구가 다수 존재함. 개인 변호사가 주도하는 미국 방식 대신, 검증된 기존 단체에게 ‘손해배상’ 권한을 추가하여 제도를 자연스럽게 확장.



Timing (포럼 쇼핑 방지)

배경: 특정 국가의 유리한 재판관할권을 찾아다니는 ‘포럼 쇼핑(Forum Shopping)’ 차단.

내용: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전 EU 국가가 동시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시점을 조율하다 보니 2020년에 이르러 지침이 최종 채택됨.

미국식 Class Action(집단소송) vs. EU식 Representative Action(단체소송)의 구조적 차이에 주목

금지청구(Injunction)에서 실질적 손해배상(Redress)으로의 진화

1998년 첫 도입 이후 20여 년에 걸친 EU 집단 구제 제도의 입법 연혁



네덜란드 WAMCA: 강력한 옵트아웃과 정교한 절차



강력한 옵트아웃(Strong Opt-out) + 엄격한 적격성 심사



네덜란드 WAMCA 5년 평가: 성과와 과제

↑ 성과 (Positive)

- 👍 **법조계의 긍정적 평가:** 집단적 청구 가능 자체의 의의
- 🔊 **남소 우려 불식:** 해외 소송 남용(Floodgates) 현실화되지 않음

↓ 과제 (The Bottleneck)

- 🕒 **절차적 지연:** 5년간 손해배상 확정 판결 0건
- 📄 **원인:** 엄격한 사전 단계(3개월 대기)와 적격성 심사
- ✍️ **제언:** 판사에게 유연성(재량) 부여하여 절차 간소화 필요

한국을 위한 시사점: 절차적 엄격함과 신속한 재판을 위한 유연성의 균형 설계 필요.

유럽의 절충안: '판결 후 옵트인(Post-judgment Opt-in)'



사례: 프랑스(2014년 도입, 활용 저조), 이탈리아, 벨기에.
평가: 안전하지만 피해자의 적극적 행동을 요구하여 구제율은 낮음.

한국을 위한 시사점 (1):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소비자를 넘어 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 설탕 담합, 통신비 부당 청구 등에서 '골목상권' 피해 구제 가능.
- 불법 기업이 시장에서 도태되는 정상적 시장 메커니즘 작동.

한국을 위한 시사점 (2): ‘소송 남발’ 우려에 대한 반박 소송의 증가는 ‘혼란’이 아니라 ‘정의의 회복’입니다.



The Real Problem (진짜 문제)

- 부당한 소송(Abusive Litigation)과 정당한 소송을 구분해야 함.
- 억울한 피해의 구제조차 ‘남소’로 매도해서는 안 됨.



Fact Check (한국의 현실)

- 한국 법원은 손해배상액 인정에 보수적이며 징벌적 배상이 제한적.
- 미국식 ‘기획 소송’ 광풍이 불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낮음.

Legal Editorial

안전장치: 부당한 소송(Abuse)을 거르는 필터



조기 기각
(Early Dismissal)

청구 원인 미비 시
본안 전 종결



비용 부담
(Cost Allocation)

패소자 부담 원칙
유지하되 공익 소송
예외/기금 활용



엄격한 요건 심사
(Certification)

대표성, 효율성,
공통 쟁점 사전 심사



반복 소송 제어

동일 원고의
무분별한 제기 제한
(이스라엘 모델)

소송 주체: 집단소송(Class Action) vs 단체소송(Representative Action)

집단소송 (미국/캐나다)	누구나 제기 가능 (평등)	소비자, 소상공 구분 없이 활용.
단체소송 (유럽)	적격 단체만 제기 (전문성)	엄격한 요건(비영리성) 충족 필요.
한국형 제안 (이탈리아 모델)	두 제도의 결합	피해자 개인의 소송 권리 보장 + 전문 단체 지원 병행.

제언: 포괄적이고 제한 없는 ‘옵트아웃 집단소송법’ 도입



**전면 도입
(General)**

소비자, 증권 등 분야를
한정하지 않는 일반법 제정.



**옵트아웃
(Opt-out)**

합리적 무관심을 극복하고
실효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방식.



**제한 철폐
(Unrestricted)**

기업, 상인, 소비자 누구나
이용 가능해야 함.

전략: 선(先) 도입, 후(後) 보완 (글로벌 표준 도입 후 미세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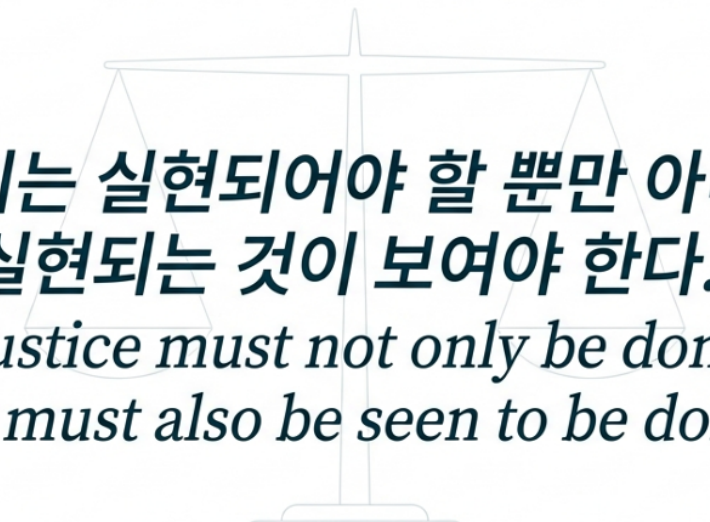
결론: 공정한 디지털 경제를 위한 필수 인프라

대한민국: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국가 | vs 아날로그 수준의 규제 제도.

집단소송제도: 규제가 아닌, 시장 신뢰(Trust)와 공정 경쟁을 지키는 '자본주의의 파수꾼'.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은 시기상조가 아니라,
이미 늦었습니다. 2026년 즉각적인 도입이 필요합니다.

Legal Editorial



"정의는 실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현되는 것이 보여야 한다."
*(Justice must not only be done,
but must also be seen to be done.)*

Noto Serif KR

발표: 이은우 변호사

자료 출처: '세계의 집단 규제 제도와 우리에게 주는 함의' (2026)

1. 소비자단체들의 숙원, 소비자 3법의 필요성

■ 쿠팡, SKT, KT, LG 유플러스, 롯데카드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입점업체 피해, 머지포인트 소비자피해, 이동통신사의 5G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온라인플랫폼의 반품, 환불, 사기 피해 등 셀 수 없이 많은 집단적 소비자피해 발생

■ 현재 소비자 피해구제 문제점

-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 → 분쟁조정(집단분쟁조정) → 개별 또는 공동 소송진행

- SKT : 모든 집단분쟁조정 불수락, 소송대응

-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에 대한 소송 : 2015년 소송, 2018년 일부 배상 판결, 2024년 대법원 최종판결 (손해배상은 200여명 중 4명 인정-개인정보유출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기업의 위법 사실을 증명해야...)

- 라돈침대 소송: 2018년 5천명이 넘는 소비자가 소송제기, 2025년 7월 대법원 최종판결(487명 중 130명에게 100만원 수준의 정신적 피해보상)

■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입증책임의 한계

■ 국내 소비자 역차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 미국: 소비자 1인당 약 5,000달러~ 10,000달러의 현금보상과 차량 재매입 실시

- 한국: 소송을 제기한 일부 소비자에게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애플 배터리 성능조작 사건]

- 미국: 약 5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 지불, 개별소비자는 별도의 증명없이 보상

- 한국: 일부 소비자 소송제기 1심 패소, 2심 일부승소 판결, 보상액 7만원 수준

■ 고의, 악의적 피해발생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2. 집단소송법 도입의 효과

-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한 유형의 집단적 소비자피해,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및 배상 가능
-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격차, 국내 소비자 역차별 문제 해소
- 기업의 책임 경영 및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
-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
- 소송의 경제성 및 효율성 확보

3.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소비자단체는 보다 실효적인 제도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해 이학영 의원안을 지지해 옴.
 -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로 원고적격이 분명함.
 - 옵트인 설계로 참여 의사 및 자기결정권 존중
 - 이학영의원안은 1단계 공통의무확인, 2단계 피해자의 채권신고를 기반으로 채권확정절차를 거쳐 소비자 계약과 관련된 다수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플랫폼,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등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영역에 효과적으로 적용
 - 인지대 상한 500만원으로 제시하여 소송 비용, 절차 장벽을 낮춤.
 - 정보제출명령 및 징벌적손해배상(고의 중과실의 경우, 3배)
 - 이는 동일한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현실적으로 구제하고 비용, 입증책임의 장벽을 낮춰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설계됨.
 - 소비자단체의 숙원과제인 소비자 3법과 부합
 - 시민사회 합의안은 소비자단체가 주장한 안과 일부 차이점이 있으나 집단소송법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지지함. 시민사회단체 합의안은 사건 성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 소비자피해는 반복되고 있고 책임지는 기업은 없음. 피해는 집단적으로 발생하나 소비자가 집단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음. 남소우려, 기업경영악화는 핑계에 불과함. 지금 당장 도입이 시급함.

심제원 / 법무법인 여기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1. 들어가며

경실련에서는 집단소송법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 생각하고 있음. 이번 회기내 여야의 구분없이 활발하고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음. 이에 한경수 변호사님과 이은우 변호사님의 발제문을 바탕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2. 집단소송법안 비교 검토 및 쟁점에 대한 토론문 : 한경수 변호사님 (참여연대)

가. 총론

그동안 제출된 주요 법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여 쟁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임.

나. 토론내용

① 집단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 : 소비자단체가 원고로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권익구제에 어떤 점이 유리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단순히 기존 소비자단체의 의견이나 주장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 권익구제에 어떤 부분이 실질적인 도움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이는 추후 제기되는 소송이 경합된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할지와도 관련되는 문제임.

② 소송허가 절차에서 기간 경과시 허가 간주규정 : 오기형 의원안 제13조에는 법원이 3개월 내에 소송허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한다는 규정만 있는 것으로 확인됨. 경실련에서는 그동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 소송허가에 대한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예)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 집단소송이 2022년 12월 소제기. 2025. 6. 11. 집단소송 허가결정. 2년 6개월간 소송허가에 대한 판단만 한 것이고, 현재 피고가 즉시항고를 한 상태. 2026. 1. 23. 즉시항고에 대한 2차 심문기일 진행. (원고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따라서 경실련에서는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는 백혜련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음. 그리고 위 기간이 도과하면 소송허가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있음. 해당 내용이 오기형 의원안에는 없는데 이를 반영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의견 및 논의가 필요함.

③ 집단소송이 경합된 경우 소비자단체의 책임확인소송이 우선되는 조항 : 오기형 의원안 제13조 제3항 내용은 아래와 같음.

법원은 원상회복 · 손해전보 · 손해배상 유형의 집단소송에 대한 허가 결정이 먼저 있더라도 책임확인소송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확인소송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원상회복 · 손해전보 · 손해배상 유형의 집단소송절차는 책임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

책임확인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이 경합되어 접수된 경우 위 조항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다른 사건들은 기일을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집단소송법의 제정취지인 신속한 권리구제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조항이 삭제될 경우 장점과 단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이에 대한 부가적인 문제로 기업측에서 집단소송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임. 기업측에서 친기업 소비자단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소송을 제기한 다음 소송을 해태하거나 의도적으로 패소를 받는 상황은 가능성이 없는지. 선고를 정지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점이 있는지 등 논의필요. 이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3. 집단소송제도 국가별 현황조사 : 이은우 변호사님 (정보인권연구소)

전세계의 집단소송에 대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자료라고 보임. 이를 바탕으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하여 아래의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집단소송이 가장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디인지, 어떤 방식인지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 우리가 참고를 하거나 지향을 할 국가는 어디인지, 이유는 어떠한지에 대한 발제자의 생각 및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끝.

토론3. 집단소송법에 담겨야 할 핵심사항

박정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사건	해외	한국
• 애플이 2016. 경 배터리 꺼짐을 해결하고자 기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놓고는 마치 결함이 해결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일명 애플 배터리 게이트)	• 미국 소비자들은 2018. 01. 애플을 상대로 32건 집단소송 • 2020. 03. 집단소송 종료 - 애플은 4,185억 원~6,750억 원소비자에게 배상	• 사건 당시 소송의사를 밝힌 42만 명 중 2018. 소를 제기한 사람은 약 6만 명(병합 포함) • 2023. 02.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 패소판결(7명만 항소) • 2023. 12. 서울고등법원 - 원고 7명에게 7만 원 배상 • 대법원(2024다205538) 계속 중 - 소제기(1심부터) 8년째 진행
(시사점) 1. 미국의 애플기기와 한국의 애플기기는 다른가? 2. 소송절차의 복잡과 번거로움(위임장, 인감증명 제출 등으로 소비자의 중도포기) 3. 소송의 장기화(2년과 8년)		
• 운동화 제조사가 '신고만 있어도 살이 빠진다'는 신발을 광고 - 「다이어트 그만하고 신기만 해라」, 「10걸음으로 12걸음의 효과를」 등 표시광고법 위반	• 미국 소비자들이 2011. 리복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 (리복) 소비자피해 배상금 337억 원을 내놓고,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87%를 환불 - (스케처스) 소비자피해 배상금 540억 원을 내놓고, 소비자에게 40~80달러를 지급	•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 9개 신발 제조회사에게 10억 7,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 (리복) 과징금 3억 9,900만 원 - (스케처스) 과징금 2억 1,700만 원 - 소비자 배상: 0원
(시사점) 1. 미국은 표시광고법 위반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수 2. 한국에서는 신발 제조회사들의 2011년 한 해 한국매출액의 0.1% 정도만 과징금으로 납부 3.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은 0원		
• 폭스바겐은 디젤차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관련 소프트웨어를 조작 - 시험 중에는 정상범위 내 작동 - 실제 주행 중에는 배기가스 저감성능을 낮춰 소비자가 연료효율 및 주행성능이 높은 것으로 체감하도록 기망	• 미국 소비자 2015. 10. 집단소송 - 2016. 4. 배상합의 - 폭스바겐 디젤 차량 소비자에게 20조 6,550억 원 배상(폭스바겐 소유자 47만 5,000명에게 한대당 675만 원~1,350만 원) • 캐나다, 호주에도 유사 규모 배상 • 독일 소비자에게는 소극적이었으나 2018. 집단소송법 마련되고 2019. 독일 소비자단체(VZBV)가 표본확인소송을 제기(원고 44만 6,000명) - 2020. 02. 전격 배상합의 - 26만 명의 독일 소비자들은 배상에 따라 182만~845만 원 배상	• 한국 소비자 2015. 10. 집단소송 - 서울중앙(2015가합564452) 등 34건 • 2019. 08. 차량 1대당 100만 원 위자료 배상 인용 • 2023. 항소사건 대부분 화해권고로 종결
(시사점) 1.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의 폭스바겐 차량과 한국의 폭스바겐 차량은 다른가? 2. 집단소송제도가 '있고, 없고'에 따른 기업의 태도 변화 및 해결의 신속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		

* 이상 뉴스타파 이범준 전문위원의 [만만한 대한민국 소비자] 시리즈(2022. 09.~10.) 기사 참고

1. 언제까지 후진적 수준에 머무를 것인가.

- 계엄세력을 평화적으로 물리치는 국민의 정치적 인식, 코스피 5,000을 달성한 경제 여건은 물론 소비자들의 인식수준 역시도 높아 선진국 반열에 있으면서도 유독 소비자집단소송 관련 분야만 전근대적(국가 중심의 과징금 제재), 후진적 수준
- 집단소송제도가 없는 현행 한국법체계가 갖는 한계(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수준)는 비교법적으로 매우 명확
- 쿠팡사태라는 단일 사건에 초점을 맞춰 제도 도입 필요성을 따지기 보다는 영미법계는 물론 대륙법계조차 opt-out 방식의 집단소송제도가 활용되는 세계적 흐름에 우리나라도 궤를 맞추어 필요 존재

2. 집단소송법에 담겨야 할 핵심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적용범위: 법률로 한정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며, 행위 부작용 발생 시 향후 규제
 - 원고적격: 대표당사자 또는 소비자단체(책임확인소송)에게 부여함이 타당
 - 소송허가(요건):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5조는 소송허가요건이 까다롭고, 이를 다투면 즉시항고 효과에 따라 시간만 지연되며 본안판단에 이르지 못해 사실상 제도의 형해화 → 소송허가 결정에 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을 배제하도록 설계 필요
 - 증거개시제도(Discovery): 한국기업이 한국기업을 상대로 미국에 소를 제기한 이유가 바로 증거개시절차 때 문[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이 2019. SK이노베이션 상대로 LG배터리 기술진을 데려가 영업비밀을 빼냈다면 미국 델라웨어 등 법원에 소 제기] → 한국과 외국 간 소비자에 대한 배상책임 규모가 크게 다른 이유도 바로 기업내부의 증거가 법원에 현출되지 않고 있는 것에 기인, 따라서 집단소송제도 도입 시 법원 감독 아래 영업비밀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가 재판에 현출되게 하고,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기업에게 책임인정 등의 규정을 명문화 할 필요
 - 기판력: 집단소송 도입의 존재 이유가 Opt-Out, 징벌적 배상은 절차법 체계 상 불필요
- ▶ 발제문 검토 시 위 핵심사안이 담긴 가장 가까운 법안은 시민사회단체안으로 보임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긴급 토론회

발행일 2026. 2. 5.

발행처 이학영·서영교·백혜련·박주민·오기형·김남근·차규근·한창민
국회의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실련,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 본 자료는 각 주최 단체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